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2. 12. 13.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4
제 2조 의 무	4
제 3조 적 용	4
제 4조 용어의 정의	4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7
제 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7
제 7조 승낙의 의무	8
제 8조 계약의 준수	8
제 9조 해 약	9
제10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10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 사 시 행	11
제12조 연소기 등의 연결	11
제13조 가스계량기	11
제14조 공 사 비	12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 검 침	14
제16조 계량의 단위	14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14

제5장 요 금

제18조 요금의 적용기간	16
제19조 요 금	16
제20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16

제21조 요금의 수납	17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18
제23조 10원 단위 미만 처리	19
제24조 이 의 신 청	19
제25조 요금계산의 정정	19
제26조 보 증 금	19

제6장 공 급

제27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21
제28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21
제29조 공 급 중 지	22
제30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23

제7장 안 전

제31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24
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24

제8장 기 타

제33조 문 서 보 관	25
제34조 사용장소의 출입	25

부 칙

제 1조 시 행 일	25
제 2조 경 과 조 치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에너지(이하 "당사" 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가스의 공급조건, 시설분담금, 공사비의 부담, 가스사용료, 안전관리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의 무)

-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 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 하겠습니다.
-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 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대장을 관리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0.)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광주광역시 전역의 당사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m³의 총 열량을 말합니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개정 2012.06.25.)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개정 2012.06.25.)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가스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 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 합니다. (개정 2012.06.25.)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 시설의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 공급의 일시 중단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 2009-236호)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말합니다. (개정 2009.12.24.)
19. "폐지" 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인입배관의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용착 등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설 2018.2.23.)
20. "해지" 라 함은 전출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인입배관의 절단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설 2018.2.23.)
21. "듀얼연료설비" 라 함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신설 2020.01.10.)
22. "연료대체" 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하여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설 2020.01.10.)
23. "특수계량기"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검침,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

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합니다.(신설 2020.01.10.)

24. “도시가스 공급계약” 이라 함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조건, 시설분담금, 공사비의 부담, 가스 사용료, 안전관리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당사와 수요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21.04. .)
25. “도시가스 사용계약” 이라 함은 가스사용, 요금납부 이행, 보증금, 공급중지 등 가스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당사와 수요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21.04. .)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 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1.30.)
-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개정 2014.11.28.)
- ④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사용자는 변경내용 발생 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4.11.28.)

제 6 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개정 2021.04. .)
-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고시(제2009-236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12.24.)
-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의 요청 또는 회사가 안전에 필요하여 인입배관이 폐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8.2.23. , 조문이동)
- ④ 제1항에 따라 신규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예정량이 10만^m³/월 이상인 경우 가스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월별 사용량에 대한 약정물량을 체결 할

수 있다.(신설 2018.2.23.)

제 7 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공급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개정 2020.11.30.)

1. 가스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사유지 저축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개정 2020.11.30.)

2. 삭제 (2009.12.24.)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01.10.)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설 2020.01.10.)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신설 2020.01.10.)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동절기 수급관리 수단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한 산업체 대상)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 또는 고객센터로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고객센터에서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고지서를 통한 미납요금 안내 및 체납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 2018.05.25.)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교체비용 + 전년 동월 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 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전년 동월 사용료의 5배 (개정 2021.04. .)

4. 계량기 이전 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 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 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 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 명의로 변경 신청 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 동월 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 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당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신설 2020.01.10.)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9]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 9 조 (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에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당사 또는 고객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에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

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 당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가스공급이후에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개정2008.05.13., 2021.04. .)

⑥ 제8조 1항 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신설 2018.05.25.)

제 10 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 11 조 (공사시행)

-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3., 2020.11.30.)
- ② 수요자가 선정한 시공자에 의해 시공된 가스사용시설은 당사에서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동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제 12 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 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0.)
- ② 삭제 (2005.05.13.)
- ③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1.30.)

제 13 조 (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의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 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

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당사가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설치한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01.10., 2020.11.30.)

③ 가스계량기 및 온압조정장치는 관련 법률 및 특례기준에 의거 사전 승인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01.10., 2020.11.30)

④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주택용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및 그 밖의 대용량 가스계량기 교체는 당사가 실시합니다. (개정 2008.02.22.)

⑤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 설치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 이내인 경우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개정 2020.01.10.)

⑥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당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원격으로 사용량을 확인하는 설비는 계속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선로 및 원격지시부 등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리드스위치가 부착된 계량기로 당사가 교체하며, 계량기 이외의 원격설비의 연결 및 유지보수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개정 2014.11.28.)(개정 2020.01.10.)

⑦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온압보정장치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설치 이후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신설 2020.01.10.)

⑧ 제⑦항의 온압보정장치를 회사에 사전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합니다.(신설 2020.01.10.)

제 14 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은 별표 “2에 의합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납부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를 포함한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

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개정 2018.5.25.)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이후, 단독주택의 경우 동일 지번 내에 세대수가 추가되더라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수요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표4 세부 시행기준 참조)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경계선 내의 사용자 공급관, 입상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 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토지경계선 내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4.11.28.)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 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삭제 (2009.12.24.)

⑨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요자와 합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신설 2021.04. .)

⑩ 동일 필지 내 두 개 이상의 공급관 매설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신설 2022.12.13.)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 15 조 (검침)

-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격월 검침, 격월 송달은 주택용 취사전용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4.11.28.)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세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개정 2014.11.28.)
- ③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자가검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계량기 지침이 상이하거나, 가스계량기 고장(3개월 지침 미변동 포함) 또는 가스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임의기재 등으로 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고 확인 검침을 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8.2.23.)
-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고지할 때에 계량부와 지시부의 사용량이 다를 경우 계량부의 사용량을 적용하며, 요금 정산은 정산시점의 가스 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신설 2018.2.23.)

제 16 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m^3)로 하며 검침 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 17 조 (사용량의 산정)

- ①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온압 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광주광역시장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 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m^3)을 결정합니다. (개정 2012.06.25.)
- ② 당사는 제1항에 의거, 결정된 사용량(m^3)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m^3)을 곱하여 요금 고지를 위한 사용량(MJ)을 산정합니다.(개정 2012.06.25.)
-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가스계량기의 고장, 내부세대 자가검침 미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검침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년 동월의 검침이 실검침 또는 고객검침이 아닐 경우에는 동일 사용 형태의 전년동월 평균사용량을 적용합니다.(개정 2018.02.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하고, 인정고지 등에 대한 사용량 정산은 정산하는 달의 요금 고지기준(사용기간, 열량, 단가)으로 정산합니다. (개정 2018.02.23.)

⑤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로 공급되는 경우 사용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산정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신설 2008.02.22.)

⑥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 하여 산정합니다. (신설 2008.02.22.)

$$V = \frac{V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 V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 사용량(m³)
- P = 최고 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또는,

$$V = \frac{V1 \times (10,332 + P)}{10,332 + 100}$$

- V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 사용량(m³)
- P = 최고 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mmAq)
-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⑦ 온압보정장치의 고장으로 보정 지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17조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단 저압의 경우 광주지역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신설 2018.02.23.)

제 5 장 요 금

제 18 조 (요금의 적용기간)

가스사용량의 적용은 전월 정기검침일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로 합니다.

제 19 조 (요금)

-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장이 승인한 별표 5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1998.08.0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 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 합니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요금 조정 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 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⑥ 가스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22. 12. 13.)

제 20 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 영업1종, 일반용 영업2종, 냉난방공조용, 산업용(산업용1, 산업용2),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및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 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8.02.23.)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 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영업1종 요금은 일반용 중 영업2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용 영업2종 요금은 목욕탕(단, 가스계량기가 별도 설치된 것에 한함),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개정 2008.02.22.)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용으로,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4.11.28.)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형식적요건)에 해당되며, 제조공정용(내용적 요건)으로 가스가 사용될 경우, 동일장소 경계내에 있는 부대시설(사택제외) 전체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되, 열병합발전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하고,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는 연료전지용을 적용합니다.(가스계량기가 별도 설치된 것에 한함) 단, 산업용 1 요금은 월사용량 42,480,000MJ까지, 산업용2 요금은 월사용량 42,480,000MJ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18.02.23., 2021.04., 2022.12.13.)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다음 각 호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다.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자(단, 연료전지용은 제외합니다.) (개정 2018.02.23.)
8. (삭제)
9.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개정 2009.12.24.)
10.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1.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신설 2018.02.23.)

제 21 조 (요금의 수납)

- ① 당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MJ)에 따라 별표 5 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 고지서(전자 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개정 2012.06.25.)
-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

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당사가 1인 가스사용자에게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 합니다.

④ 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따릅니다.(개정 2014.11.28.)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개정 2014.11.28.)

⑧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06.25.)

⑨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 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⑩ 공급규정 제5조 제 1항에 따라 전출입 사항을 도시가스사에 통지한 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의 별도 검침을 통하여 가스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4.11.28.)

제 22 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 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시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산업

용을 제외한 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개정 2018.11.14.)

⑥ 시장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합니다.(신설 2018.11.14.)

제 23 조 (10원 단위 미만 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 24 조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5%를 적용합니다.(개정 2018.05.25.)

⑤ (삭제 2008.05.13.)

⑥ 가스사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옥내 가스배관 손상 및 가스보일러 이상으로 가스누출시(단, 누수, 보일러 배관의 동파, 기기설정 등 보일러 연소에 의한 경우는 제외됨) 누출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당사에 하여야 하며, 당사는 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 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월사용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한다.(신설 2020.11.30.)

제 25 조 (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제 26 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제외한 주택용수요처는 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08.07.31., 2021.04. .)

1. 월 예정사용량이 42,480MJ/월 이상 가스사용자 (개정 2012.06.25., 2022. 12. 13.)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신설 2008.07.31.)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4-2조(월 사용예정량 산정방법)에 따른 월사용예정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 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07.31.)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 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전출 및 해지 시점에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개정 2009.12.24.)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⑦ 가스사용자는 보증보험증권의 만기일 도래 1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합니다.

제 6 장 공 급

제 27 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당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08.02.22.)

1. 열량 : 최고열량 44.38 MJ/Nm³(10,600kcal/Nm³)
최저열량 41.03 MJ/Nm³(9,800kcal/Nm³)

다만, 상기 열량 범위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 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 2% 이내로 합니다. (개정 2012.06.25.)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 이상)
3. 압력(주택용) : 최고압력 2,451.7Pa(250mmAq)
최저압력 980.7Pa(100mmAq)

다만, 당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호(2012.2.8)에 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 2012.06.25.)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 28 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6. 불량 및 불법연소 기구나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연소기구를 사용할 때
7.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20.01.10.)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 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9 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 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사항 중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04. .)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서를 통한 미납요금 안내, 체납 독촉장 또는 독촉안내(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를 2회 이상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8.02.22., 2021.04. .)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이나 당사에 가스 사용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개정 2021.04. .)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 될 때

8. 가스사용시설에 타연료와 동시 또는 보조용으로 전환시켜 연소시키는 공정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신설 2018.02.23.)

9.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08.05.13.)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등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신설 2018.02.23.)

③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합니다.

제 30 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02.23.)

제 7 장 안 전

제 31 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가스사용자가 안전상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특수 연소기기(보일러, 온수기, 가열로 등)를 설치, 철거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 및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상 위해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당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정 2008.05.13.)
- ⑦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⑧ 전출시에는 당사에 신고하여 막음조치를 받아야합니다. 단 일체형가스기구(빌트인) 세대인 경우 막음조치를 대신하여 중간밸브 또는 계량기 차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4.11.28.)

제 32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8 장 기 타

제 33 조 (문서보관)

- ① 당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기록을 보존합니다.(개정 2018.05.25.)
-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개정 2018.05.25.)

제 34 조 (사용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시설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도시가스시설로서 전남상정 1379-237('83. 3. 3)호에 의해 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도시가스 외의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합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시설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3.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저장시설 및 기계시설의 기계 및 탱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와 협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산출된 감정가격으로 인수하되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동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판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2009.12.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2010. 1. 1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시설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도시가스시설로서 전남상정 1379-237('83. 3. 3)호에 의해 승인 받은 것과 이후 변경승인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도시가스 외의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합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시설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3.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저장시설 및 기계시설의 기계 및 탱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와 협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산출된 감정가격으로 인수하되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동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판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2012.06.25.)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의 시행은 2012. 7. 1부터 시행합니다.

②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제27조 제1항 제1호 열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최고열량 : $44.38\text{MJ}/\text{Nm}^3$ (10,600kcal/ Nm^3)
2. 최저열량 : $42.28\text{MJ}/\text{Nm}^3$ (10,100kcal/ Nm^3)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시설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도시가스시설로서 전남상정 1379-237('83. 3. 3)호에 의해 승인 받은 것과 이후 변경승인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도시가스 외의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합니다. 단,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시설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3.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저장시설 및 기계시설의 기계 및 탱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와 협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산출된 감정가격으로 인수하되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동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판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2014.11.28.)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의 시행은 2014. 12. 1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 8조와 제 15조는 홍보 및 시스템 구축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제 8조 : 2015.2.1. 시행
2. 제 15조 : 2015.3.1. 시행

부 칙(2021.04. .)

제 1 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12. 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

등급	2.5	4	6	10	16	25	40
표준가스 소 비 량 (m ³ /h)	2.5	4	6	10	16	25	40

(개정 2008.02.22.)

○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41m³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단,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³/hr) 산정을 위한 기준 열량은 42.48MJ/Nm³(10,145kcal/Nm³)로 합니다.

(개정 2018.02.23., 2022. 12. 13.)

1) 주택용 수요가

취사전용 수요가 : 2.5m³/h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 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2) 주택용 외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1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개정 2012.06.25)

[별표2] 시설분담금(제6조 제2항 관련)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표준가스소비량(m³/h) 기준으로 차등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1. 일반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 나. 적용단가 : 26,732원/m³
- 다.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표준가스소비량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 나. 적용단가 : 123,662원/m³
- 다.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표준가스소비량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100m당 주택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4세대 미만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 나. 적용단가(원/m³)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다.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표준가스소비량
 - (1) 표준투자비는 284,204원/m을 적용 합니다.
 - (2)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 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길이를 적용합니다.
 - (3) 적용률은 40.0%를 적용 합니다.
 - (4)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수요자의 일반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적용 합니다.
 - (5)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연 평균 사용량 × 요금상감가상각비(15.73원/m³) ×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 × 내용년수(20년)
 - (6)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해당 지역 공급관의 공사종료일 기준 표준가스소비량의 합으로 합니다. 위의 공사종료일이라 함은 해당 신규 진입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 공사의 완료일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3.02.05.)
 - (7) 가스공급 신청장소가 철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표준투자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라. 삭제(2013.02.05.)

마.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주택난방용(4등급)기준

(단위 : 원/m³, 부가세 별도)

세대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금 액	2,758,051	1,337,031	863,357	626,521	484,419
세대수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금 액	389,684	322,017	271,266	231,793	200,215
세대수	11세대	12세대	13세대	14세대	15세대
금 액	174,378	152,847	134,629	119,014	105,480
세대수	16세대	17세대	18세대	19세대	20세대
금 액	93,638	83,190	73,902	65,592	58,113

세대수	21세대	22세대	23세대	24세대	25세대
금 액	51,346	45,194	39,578	34,429	29,692
세대수	26세대	27세대	28세대	29세대	30세대
금 액	25,320	21,272	17,512	14,012	10,745
세대수	31세대	32세대	33세대		
금 액	7,690	4,825	2,133		

주) 100M당 세대수에 따라 1세대(4등급 기준)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4.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236호에 따릅니다.

5. 상기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시 원단위이하는 절사하여 고지합니다. (개정 2009.12.24.)

[별표 3] 삭제 (2005.05.13.)

[별표 4] 인입배관 공사비 수요자 부담(50%) 시행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모델안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이 변경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공사비) ④항의 기존 배관에서 수요자에 분기되는 인입배관 설치 공사(이하 "인입배관"이라 한다)의 비용을 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 분할 부담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가. 공급규정 변경승인 이후 수요자 신청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도로와 병행하여 매설된 회사의 공급관에서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인입배관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 인입 배관과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대용량 수요처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사유지 구간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나. 공사진행중분기공사를 포함한 골목길 등 수요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의 경우는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인입배관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사유지 구간은 수요자 부담)에 적용한다.
- 다. 소구간공사로 공급 가능한 수요자에 적용한다.(개정 2022.12.13.)
- 라. 삭제 (2008.02.22.)

3. 용어의 정의

- 가.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여 매설된 회사의 공급관으로 부터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 나.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연결공사비"라 함은 신규 인입배관과 수요자의 내관을 연결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 라. "인입배관 공사"라 함은 기존 배관에서 수요자에게 분기되는 인입배관 설치 공사의 비용을 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를 말하며, 공사는 단독분기공사(공급관에서 1개소의 수요자에게 단독으로 인입배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와 공사진행중분기공사(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분기 공사를 말함)로 구분한다.
- 마. "표준공사비"라 함은 인입배관 공사비 중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산출기준이 되는 공사비로서 회사가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개정2021.04. .)
- 바. "수요자부담금"라 함은 인입배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요자의 동의 하에 회사

에 납부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담금 산정은 회사가 산정 공시하는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사. "소구간공사"라 함은 연장이 20m 이하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02.22., 2022.12.13.)

4. 책임과 권한

가. 담당 임원

수요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검토/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담당 팀장

담당 임원을 보좌하며, 수요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대해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담당 팀원

수요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검토에 관한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공사비 적용 기준

인입배관 표준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사비를 공인기관의 검토를 받아 공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는 이를 참고한다.

가. 인입배관 표준공사비 적용 기준

- (1) 인입배관 수요자부담 공사비 적용은 공사진행중분기공사(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분기공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도로폭 중앙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분기공사 시에는 인입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 (2) 배관부설에 필요한 자재, 폐기물 및 잔토처리, 되메우기, 인건비 및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3) m당 공사비를 산출(압력별·관재질별·관경별·도로종류별)하여 적용한다.
- (4) 야간공사 할증 : 도로굴착 허가 조건에 의해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150% 할증하여 적용한다.
- (5) 공사중 암반 및 지장물로 인한 상·하월 공사 시의 추가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할증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복구 공사비 적용 기준

- (1) 직접복구비 : 원인자 복구 승인의 경우 실 복구연장에 회사의 도로굴착 복구비 원인자 복구 단가를 적용하고, 관리청 복구의 경우 구청 또는 시에서 고지한 직접복구비를 적용한다.
- (2) 간접복구비 : 구청 또는 시에서 고지한 도로굴착 복구비로 적용한다.
- (3) 기존 도로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도로종류별, 관경별 복구 단가를 적용한다.

다. 연결 공사비 적용 기준

당일 굴착 당일 분기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한국가스안전공사 감리 대상은 제외)한다.

라. 위 가, 나, 다의 항목에서 인입배관의 단독분기공사, 공사진행중분기공사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적용한다.

6. 인입배관 공사 시공설계 및 기술검토

인입배관 공사 시공설계 및 기술검토는 회사에서 시행하며, 시공설계 연장을 기준으로 인입배관 공사비의 부담 금액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도로굴착 인·허가

인입배관 공사와 관련된 공정관리는 회사에서 관리하며, 도로굴착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회사에서 추진한다.

8. 공사비의 정산

배관매설 연장의 변경 또는 현장의 공사 여건으로 발생하는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준공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가. 정산 사유

- (1) 배관매설 연장의 증감 : 설계연장보다 배관 매설연장이 증감되는 경우 배관 매설연장 증감 비용
- (2) 상·하월개소 발생 : 지장물(상·하수도, 통신, 전기)의 과다로 인한 배관 상·하월 개소가 발생할 경우 배관 매설연장 추가 비용
- (3) 암반발생 : 배관 매설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암반 발생의 경우 암반 처리비용
- (4) 포장방법 변경 : 배관 매설 복구의 포장 방법이 부분포장에서 전면포장 또는 한개면 포장 등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 복구 비용

9. 공사비의 단가 조정

가. 정부건설표준품셈의 변동으로 회사일위대가의 변경시 공인기관에서 검토한 공사 금액과 비교하여 증감이 발생할 경우 매년 초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자재 단가(파이프, 엘보 등) 또는 간접복구비(일시점용료, 간접손괴비 등)의 변동 시 조정할 수 있다.

다. 삭제(2022.12.13.)

10. 협약 체결

수요자와 회사간에 인입배관 공사비부담에 대한 협약(유첨2 참조)을 체결하여 상호간 신의 하에 성실히 이행한다.

11. 인입배관 공사비 처리 방법

수요자와 회사간에 인입배관 공사비를 명시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인입배관 공사비 수요자 부담 금액은 시설분담금으로 처리한다.(감가상각비 상계)

12. 인입배관 공사 절차와 방법

가. 공사에 대한 절차는 유침 1의 업무흐름도에 따른다.

나. 공사 방법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시설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 인입배관 공사에 대한 현장 감독은 회사에서 실시한다.

13. 인입배관 공사 시공업체

시공업체 선정방법 : 인입배관 공사 시공업체는 도시가스사에서 등록·관리하는 협력 회사 중에서 수요자(신청자)가 선정하되, 수요자(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선정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선정 시에는 인입배관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 입찰제를 시행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한다.(개정 2022.12.13.)

14. 인입배관 공사 후 유지관리

인입배관 설치 공사 후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어 유지관리의 책임과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15. 기록유지

인입배관 설치에 대한 관련 서류는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별표5] 가스요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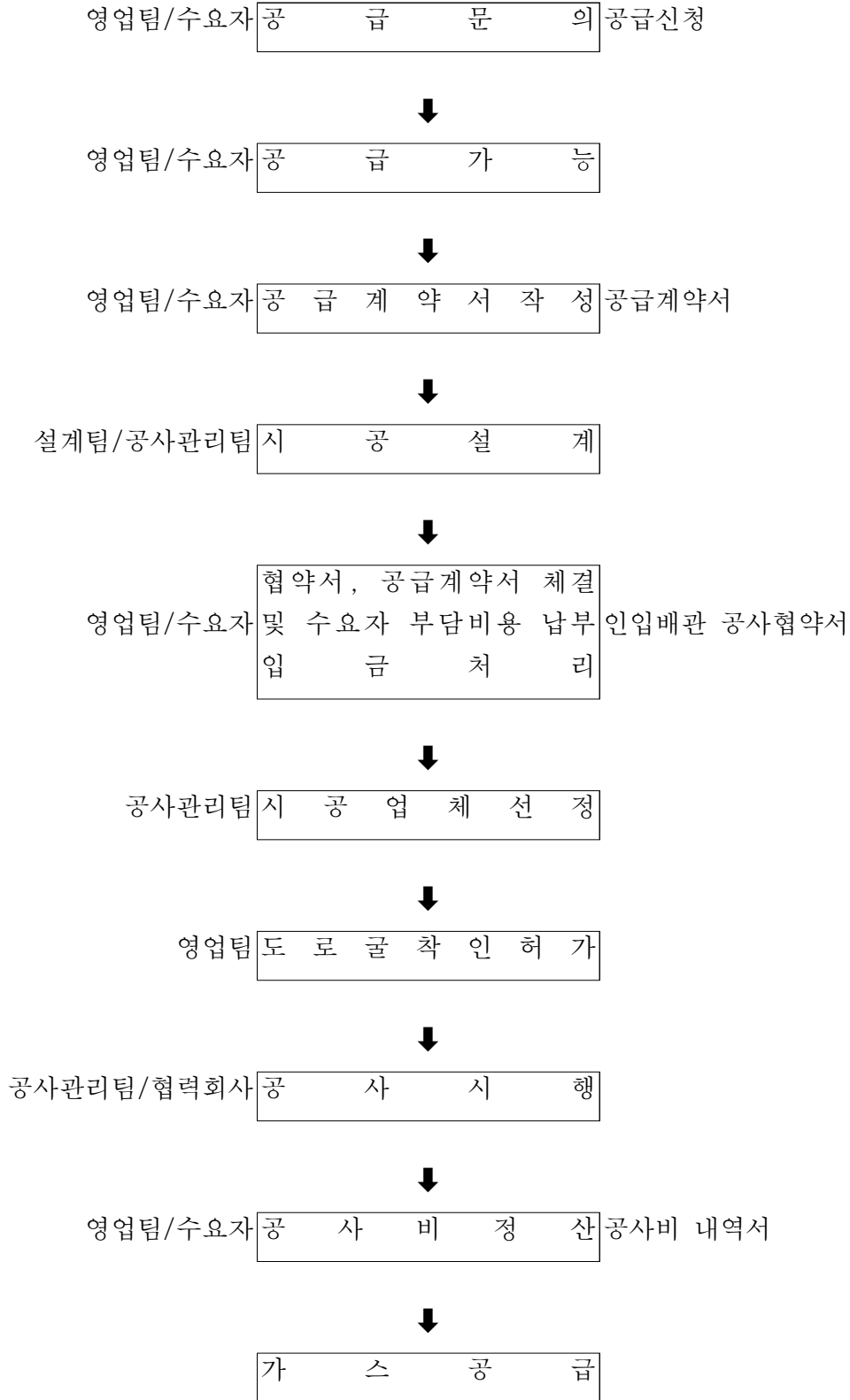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구분		요금체계	소비자요금	비고
주 택 용	기본요금 (원/매월)		750	격월검침:1,230원/2개월
	주택취사	516MJ 이하/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격월검침:1,032MJ 이하/2개월
	주택난방	516MJ 초과/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격월검침:1,032MJ 초과/2개월
업무난방용		사용량 관계없이 용도별 단일요금 적용	원재료비+ 공급비용	
수 송 용			원재료비+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원재료비+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종)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일반용 (영업2종)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냉난방 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하절기	5~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산업용1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42,480,000MJ/월 이하사용열량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산업용2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42,480,000MJ/월 초과사용열량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열병합용1"을 "열병합용"으로수정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동절기	1~3월, 12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기 타	4,5,10,11월	원재료비+ 공급비용	

- (개정 2018.2.23., 2022.12.13.)
- 주택용의 경우 (개정 2012.06.25.)
 - 월 516MJ 이하 : 취사용 월 516MJ 초과 : 난방용

[별표6] 삭제(개정2020.11.30.)

유첨1. 업무흐름도



유첨 2. 인입배관 공사 협약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수요자 ()와(이하 "갑"이라 함) 도시가스 공급회사 (주)해양에너지(이하 "을"이라 함)는 본 협약 내용을 상호 신의 하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인입배관 공사를 책임 시공한다.
2.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갑"의 토지경계선까지의 인입배관 공사비를 "갑"의 동의 하에 "갑"과 "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3. "갑"과 "을"은 인입배관 공사비의 분담금 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4. 인입배관 공사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배관에서 분기, 연결, 통합 등 "을"의 배관 변경에 "갑"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5. "을"은 인입배관 공사 후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6.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화번호 :

(별지 제6호 서식)

가스사용 (중지, 정지) 해제신청서			
수 용 가 명		사 용 처 명	
주 소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중지해제요청대상		중지해제요청일	
중 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 유	공급규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 사용중지, 정지 해제를 이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주)해양에너지 귀중			
※ 참고사항			
수 용 가 번 호		메 타 등 급	
중 지 해 제 지 침 수		사 용 료 수 납 상 황	
기 타			

(개정 2009.12.24.)

(별지 제7호 서식)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관말 연결시공계획 및 기록

1. 수용가 현황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소		공사명	

2. 공사내용(온수보일러, 온수기 시공 및 세대내 소구간 배관공사)

1) 배관공사

배관시공	배관규격 및 길이			
	보일러 연결관 재질 및 길이			
시공자 현황	상호		전화번호	
	시공관리자(주민등록번호)			

2) 연소기 설치공사

보일러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		용량	
시공	배기형태	CF(자연배기), FE(강제배기), FF(강제급배기)		
기타	연소기명		용량	
시공자 현황	상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시공등록번호	
시공관리자(주민등록번호)				

- 첨부 : ① 완공도면 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사업자 단체가 발행한 하자보증서 1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4조 관련 시공계획 및 시공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주)해양에너지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도시가스 요금 체납 독촉장

주 소	
수 용 가 명	

고객께서 사용하신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년 월 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체납현황

고지년월	미납요금	고지년월	미납요금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체 납 총 액	원

2. 납부기한 : 년 월 일

3. 납부방법

가. 고객입금전용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나. 회사 또는 고객센터 직접 방문 납부

- 위 치 :

- 방 문 처 :

4. 문의사항 : 1544-1115 (고객지원팀)

 년 월 일



(신설 2008.02.22.)

(별지 제10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계약번호	
계약구분	

[회사용]

(이하 '갑')과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김형순 (이하 '을')은 판권법규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판권법령')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 합니다.

1. 건물명 및 공급장소

건물명	고 렵 전 화 번 호
공급받을 주소	공 급 회 명 일
계약자 현 주소	주 민 (사 업 가) 등 록 번 호

2. 계약내용 및 시설별담금 등

사용처	요금용도	G/M 등급	표준 가스 소비량(m ³ /h)	세대수	공급가액		VAT	납부금액(원)
					원 반	수요가부담		
① 시설분담금					-	-	-	-
② 인입배관공사비 : 배관재질() 관경() 인장(m)							-	-
합 계 (①+②)							-	-

3. 시설 기본정보

건물용도	상가(영업용)	건물형태	신축	인입위치	
공급압력	저압	특정구분	비특정	조정기설치	
사유권	무	도도포장종류		조정기설치	무

4. 주요 열소기 사양

연소기종류	용량(km/h)	용량(kg/h)	냉방용량(USRT)	수압

5. 사용조건

(1) 갑은 광주광역시(또는 전남도지사)으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낙합니다.
 (2) 갑은 동 공급계약 체결시 위 공급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3) 도시가스 공급은 위의 공급선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 가능합니다.
 (4) 갑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판권법령에 따라 기존 LPG시설 철거 후 도시가스 공급은 가능합니다.
 (5) 갑은 공사 후 공급반대여 분기, 연결, 봉합 등 위의 책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갑은 월 측정사용량이 3천리 이상일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경우 가스사고대상책임보험(대입:3천만원, 직불:3억원이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갑은 월 측정사용량이 4천리 이상일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8) 갑은 월 측정사용량이 1천리 이상일 경우 월 사용측정량의 3월분 이내액에 해당하는 보증금(0천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9) 갑은 월 측정사용량이 1천리 이하이면서 가스사용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가스사용자 또는 건물소유자는 가스공급선 까지 월 사용측정량의 3월분 이내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계약일까지로 합니다.
 (10) 기타합의사항
 계약기: 가스미터기 교체비용은 매월 요금외지서액 (원/월)합산하여 부과됩니다.

2020 년 00월 00일

“갑” 주소:

상 호:

성 명:

“을” 주소: 광주광역시 정안구 하남산단외로 288

상 호: ㈜해양에너지

성 명: 대표이사 사장 (인)



(신설 2020.11.30.)